협착재해

1. 재해발생 경위

2002년 6월 ○일 09:0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산업(주)레미콘 현장에서 골재를 벨트컨베이어로 운반하던 중컨베이어 아래로 떨어진 골재를 긁어 모아 회전중인 컨베이어로 퍼올리는 작업을 할 때 캐리어 풀 리와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작업자의 팔과 머리가 협착 되어 사망하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대한방호미실시

가.벨트컨베이어가동중청소작업실시 나.캐리어 풀리와 벨트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에

다.비상정지스위치설치부적절

4. 동쫑깨해예방대책

가.벨트컨베이어청소작업시운전정지

벨트컨베이어 하부에서 낙석제거 작업 등에는 운전을 정지시키고 기동스위치에는 잠금장치 설치 또는 "청소중"의 꼬리표를 부착하고 작업하여야 함.

나위험점에방호울및접근방지울설치

벨트컨베이어 하부 캐리어 풀리와 벨트 사이의 위 험점에 방호울 또는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접근방지울을 설치하여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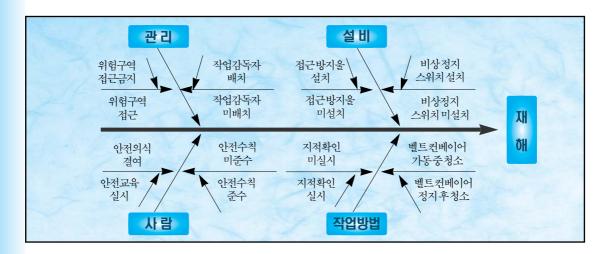
다.비상정지스위치추가설치

벨트등위험점에 협착등위험한 상황이 발생할경 우기기의 기동을 정지 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 를설치하여야함.

5. 법위반사항

- 법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시 500 만원이하의 벌금

3. 재해 요인도



충돌재해

1. 재해발생 경위

2002년 7월 ○일 15:30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소 재 ○○공업사에서 수도배관용 파이프 절단 바이트 날을 탁상용 연삭기로 연마작업을 하던 중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던 숫돌이 파손되면서 재해자 흉부를 강 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가.연삭기측면덮개미설치 나.연삭숫돌사용전결함유무미확인 다.안전작업미실시

3. 재해 요인도

4. 동쫑재해예방대책

가.연삭기 측면덮개설치

숫돌파손시 파편충격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 를 가진 측면덮개를 설치하고, 연마작업시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여야함.

나 연마작업시 안전작업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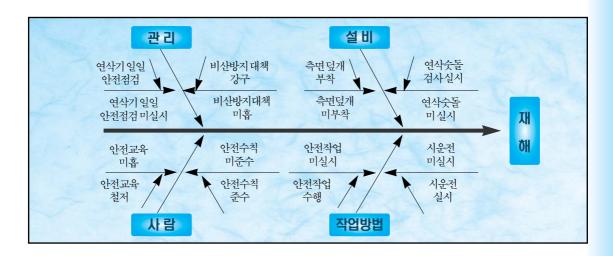
연마작업시 숫돌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연마 가공 작업시 숫돌과 가공면과의 각도를 15~30°를 유 지하여야하고,작업시작전 1분이상,연삭숫돌교체후 3분이상 시운전을 통해 결합유무를확인

다.사용전 연삭숫돌검사실시

연삭숫돌사용전 갈라짐, 잔금, 이빠짐, 흠집 등 외관 검사를 하고, 목재 해머로 가볍게 두들겨 소리로 이상 음를 확인한 후작업을 함

5. 법위반//항

- 법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시 500 만원이하의 벌금



ď.

1. 재해발생 경위

2002년 4월 ○일 10:00분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 ○사업장 스폿용접라인 천장에 형광등을 설치하기 위해 포크리프트에 파렛트를 끼워 교류아크용 접기로 용접작업하기 위해 접지선을 철골트러스트 구조물에 연결하는 순간 용접기 홀더의 충전부에 접촉된 후 1.5m 아래로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가.교류아크용접기에자동전격방지기미설치 나.홀더선 피복손상에 대한 충전부 방호조치 미 실시

다.부적절한작업대사용 라.추락방지조치미흡

3. 재해 요인도

4. 동꽁깨해예방대책

가.자동전격방지기설치

습한 작업장소,고소 작업장소,도전성이 높은 작업 장소에서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에는 반드시 성능 검정에 합격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 · 사용하여야 함.

나.교류아크용접기의홀더선등충전부 방호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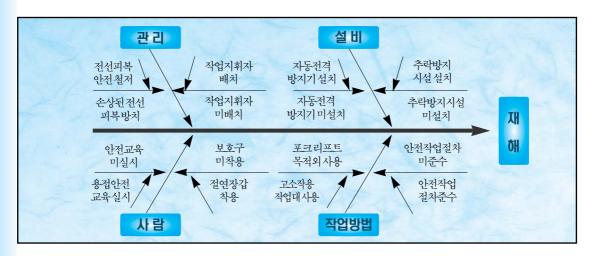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전원선 등의 피복은 손 상되지않도록유지 · 관리하여야함.

다.포크리프트목적외사용금지

포크리프트는화물운반을위한기기로작업자의탑 승작업은 금지되어야 하며,고속작업시에는 추락방 지조치가된작업대를사용해야함.

5. 법위반//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시 500 만원이하의 벌금



추락재해



1. 재해발생 경위

2002년 7월 00일 10:30분경 서울시 도봉구 ○○ 건설(주) ○○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인 비계공이지상 3층 외부비계위에서비계 해체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약 10m)하 여사망한재해임.



2. 째해발생요인

가.안전대부착설비미설치 나.보호구미착용

나.작업방법불량

3. 재해 요인도

4. 동꽁깨해예방대책

가.안전대부착설비설치 및 안전대착용 후작 업실시

비계 해체작업 등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대 부착용 로프 등 안 전대 부착설비설치 및 안전대 착용 후작업실시.

나.올바른개인보호구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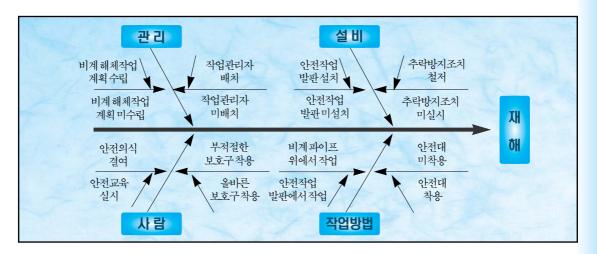
안전모를 착용하는 때에는 턱끈을 체결하여 벗겨지 지 않도록 함.

다.작업발판설치

비계 해체 작업시 작업 발판을 설치 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실시해야함.

5. 법위반//항

- 법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 시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충톨재해

1. 깨해발생 경위

2002년 5월 부산시 수영구 (주) ○ ○건설 ○ ○아파 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일 하역작업을 하던 중지게차 포크를 하적단의 5개 파일 중2개를 떠올리는 순간위에 적재되어 있던 파일 이 무너져 구르면서 쐐기(고임목)를 끼우던 트레일러 기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가.작업방법불량 나.중량물취급시의작업계획미수립 다.관리감독소홀

3. 재해 요인도

4. 동꽁깨해예방대책

가.화물중간에 빼내기 금지

적재된화물을하역작업시하단이나중간에서화물을 빼내면 적재된 화물더미가 불안전해지므로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위에서 차근차근하역해야함.

나.중량물취급시의작업계획수립및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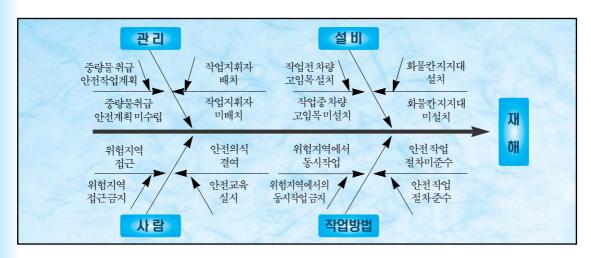
중량물 취급 등 위험한 작업에 있어서 작업계획서 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 게주지시킴

다 작업지휘자지정철저

화물의 중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 작업 장소에지휘자를지정하여 작업을 직접지휘토록 함.

5. 법위반사항

-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



붕괴·질식 재해

1. 재해발생 경위

2002년 4월 전북군산시소재 ○○산업(주)작업장에서 파목을 분쇄하여 톱밥을 생산 하던 중 재해자가 톱밥이 싸이클론 집진설비 배출구를 막아 배출되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진설비 가동을 중지시키 고 톱밥 사일로에 들어가 점검할 때 톱밥이 붕괴되어 질식사맛한재해임



2. 째해발생요인

가.톱밥사이클론집진설비점검방법부적절 나.구명줄미착용 다.작업감시자미배치

4. 동쫑재해예방대책

가.사이클론집진설비외부에서점검

외부에서 사이클론 집진설비 배출구 측에 진동을 가하는 진동설비 설치 및 수공구 등을 활용하여 집진 설비 외부에서 배출을 원활히 하도록 안전작업실시.

나.구명줄등착용

부득이 집진설비 내에 들어갈 경우에는 작업자의 몸에 구명줄을 걸고 윈치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저 장물에 묻히는것을 방지하기 위한조치를 하여야함.

다.안전작업허가서발급

사일로내 작업시에는 산소결핍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급받아 사전에 충분 한안전조치가확보된 후에작업을실시하여야함.

5. 법위반//항

- 법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시 500 만원이하의 벌금 🏖

3. 깨해 요인도

